

수 신 : 회원제위

참 조 :

제 목 :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개정 안내

---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- 다 음 -

□ 주요 개정사항

-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(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)
  - 선금의무지급 기준 개선  
(현행) 계약금액의 30% 의무적 지급  
(개정)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30% 이하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
  - 선금 추가 지급 기준 개선  
(현행) 추가 요청 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 
(개정) 추가 요청 시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%까지 지급 가능
  - 선금지급조건 개선  
(개정) 계약상대자 선금 지급 요청 시 하수급자 선금 지급 계획 포함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
- 선금 관리 합리화
  - 선금 반환 청구 기준 강화 (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)  
(개정) 선금 사용내역 확인 필요 자료 미제출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 청구
  -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(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)  
(개정)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

※ 시행일 : '26. 6. 2.

- 붙임 1.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.  
2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 
회 장 오 성



---

담당 사원 김영오 경영지원부장 유제연 기획관리실장 이을예  
시행 전건협 강원 제 428호 (2026. 6. 15)  
우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gangwon.kosca.or.kr  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[kosca32@kosca.or.kr](mailto:kosca32@kosca.or.kr)